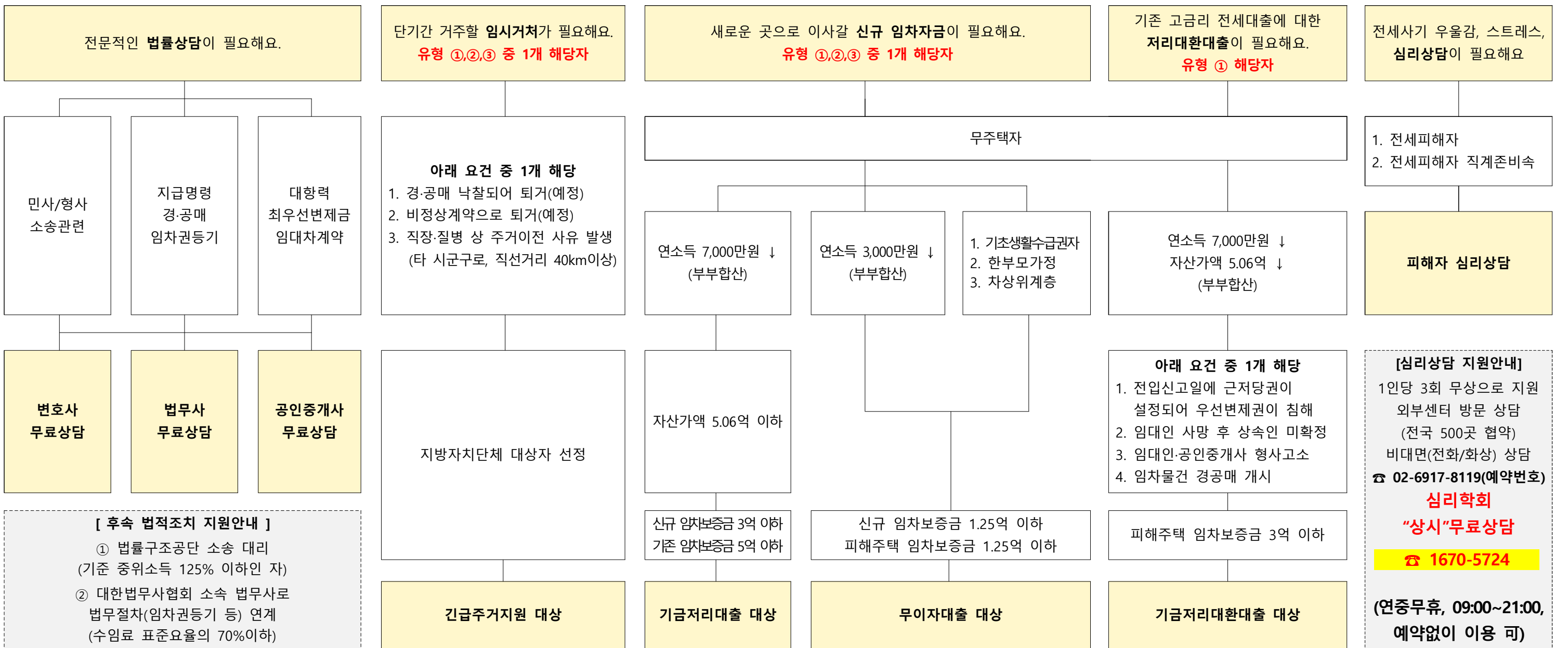


[전세피해센터 지원프로그램 대상 안내문]

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*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(전부보증)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

- 유형 ① 임대차계약 종료**([피해지원제도限] 계약해지 통보사실, 경매개시에 따른 배당신청사실은 인정)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**“임차권 등기”**를 완료하였습니다.
- 유형 ② 경·공매 낙찰**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(30%이상)를 받지 못했습니다.
- 유형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**(신탁사기, 이중계약 등)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
- ※ 「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
※ 본 안내문에 적힌 내용은 **최소한의 대상유무**를 판단하는 기준이며, 세부 요건은 ‘**안심전세포털**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**안심전세포털**(www.khug.or.kr/jeonse) / 프로그램 전화문의 : 1533-8119, 02-6917-8119 / 이메일 문의 : rent119@khug.or.kr / 무료 심리상담 : 1670-5724 (연중무휴, 09:00~21:00)